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7. 13.(목) 1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7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7월 5일

3. 제안 이유

-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함께 교육도 국가 간 교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 속에 충청북도교육청도 외국과의 교육 관련 교류정책과 추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시행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외국과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담아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국제교류협력’ 정의 규정에 ‘국제교류협력’을 수정 보완하고, ‘학생’, ‘교육지원’, ‘교육 관련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충청북도의회 ‘동의’ 규정을 ‘의결’로 변경함(안 제7조)

○ ‘교류추진 및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및 지원’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 국제교류협력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

#### 5. 검토 의견

##### 가. 조례 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은 2008년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08년부터 뉴질랜드·미국·캐나다·프랑스 등과 ‘국제학생교류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파라과이 간 교육정보화지원 MOU 체결’(2012년~계속)과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교류프로그램 운영’(2017~계속), ‘충청북도교육청-베트남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및 하노이대학교 MOU체결(2018), 하노이시교육청 MOU체결(2019)’, ‘고려인 민족학교 초청’ 등 재외동포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 추진과 같은 다양한 국제교류교육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옴.

(2018년~2022년까지 13개 사업에 1,295,200천원 예산이 소요됨)

## 2008~2021년 국제학생교류프로그램 사업 운영 현황

국가	인원(학생+인솔)	기간
뉴질랜드	10+ 1	2008.9.
뉴질랜드	22+ 2	2010.4.
캐나다	14+ 1	2011.7.
뉴질랜드	21+ 2	2012.4.
뉴질랜드 · 하와이	26+ 3	2013.4.
미국 · 스웨덴 · 캐나다	22+ 3	2014.6.
뉴질랜드	14+ 1	2015.9.
독일 · 미국	17+ 2	2016.7.
프랑스-한국	20+ 2	2017.10
한국-프랑스	21+ 3	2019.1.
프랑스-한국	20+ 3	2019.10
한국-프랑스	20+ 3	2021.1(코로나 19확산으로 취소)

### 충청북도교육청-파라과이 간 교육정보화지원 MOU 체결

- 2012. 6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외 6명 파라과이 방문
- 충청북도교육감-파라과이 교육문화부 장관, 기획청장관, 정보기술청장관과의 교육정보화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현지 국립교원양성대학교(ISE)방문: 한국어교육과 설치 협의
- 주파라과이한국교육원, 한국학교, 한글학교 방문: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교류 프로그램(2017~계속)

- 충북교육청 직속기관(자연과학교육원) 방문 및 학교·가정체험
- 한국문화 및 역사체험: 고인쇄박물관, 김치만들기, 전통공예, 전주 한옥마을, 서울 고궁 방문 등

## 충청북도교육청-베트남 MOU 체결 현황

### 하노이시교육청

- 체결 : 2019. 2. 2.
- 내용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교사 교류사업 적극 협조

###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

- 체결 : 2018. 4. 9.
- 내용 : 기업 방문체험 협조, 베트남 기업 및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으로의 진로 탐색, 베트남에서 성공한 기업이 초청 강의 인프라 구축

###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 체결 : 2018. 4. 11.
- 내용 : 베트남 대학으로의 진학 정보 및 졸업 후 취업 현황 파악, 베트남어 교육 강사 인력풀 확보, 베트남어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공유

### 하노이대학교

- 체결 : 2018. 4. 11.
- 내용 : 베트남 대학으로의 진학 정보 및 졸업 후 취업 현황 파악, 베트남어 교육 강사 인력풀 확보, 베트남어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공유

## 2018-2022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현황

국제교류 사업명 (프로그램명)	담당부서	연도	대상 국가	국제교류협력처 (기관명)	주요내용	참여 대상	예산
이러닝 세계화 (ODA)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방문연수	미래인재과 (현.창의특수교육과)	2018	파라 과이	교육부, 주파라과이한 국교육원 및 현지학교, APEC국제교육협력원 등	·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노트북, 교육용 로봇 등 기자재 지원) · 이러닝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기간: 2018.8월(13박14일) · 인원: 교원24명	교원	73,000 천원
글로벌리더십캠프 (중요)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18	미국	해외대학, 국제기구 등	·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융 합형 글로벌 인재 육성 · 기간: 2018.1월(7박10일) · 인원: 학생30명, 인솔2명	학생	270,000 천원
베트남하노이시 교육청 학생교류 프로그램	학교자치과 (현.국제교육원)	2019	베트남	하노이시교육청	· 다문화사회 증가로 인한 베트남과 국제교육교류 · 학교교육과정체험, 홈스테이, 문화체험등 · 기간: 2019.9월(5박6일) · 인원: 학생24명, 교원6명, 인솔3명	학생 및 교 직원	15,300 천원
국제학생교류 프로 그램	학교자치과 (현.국제교육원)	2019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 프랑스 교육과정 체험(프랑스어 호텔, 관광학 등),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 기간: 2019.1월(8박10일) · 인원: 학생20명, 인솔2명	학생 및 교 직원	38,000 천원
국제학생교류 프로 그램	학교자치과 (현.국제교육원)	2019	프랑스	크레테이교육청	· 충북 교육과정 체험, 홈스 테이, 문화체험 등 · 기간: 2019.10월(8박10일) · 인원: 학생20명, 인솔3명	학생 및 교 직원	21,900 천원
이러닝 세계화 (ODA)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초청연수	미래인재과 (현.창의특수교육과)	2019	파라 과이	교육부, 주파라과이한 국교육원 및 현지학교, APEC국제교육협력원 등	·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노트북 40대 및 정보화 연수) · 이러닝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기간 :2019.4월(13박14일) · 인원: 교원20명	교원	73,000 천원

전환기교육 해외파견 특별연수(중요)	학교혁신과 (현.중등교육과)	2019	덴마크, 아일랜드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더블린교육연수원	· 전환기교육에 대한 현장연구 · 기간: 2019년상/하반기총2회 · 인원: 교원7명	교원	110,000 천원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교류연수 (중요)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19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해외대학, 국제기구 등	· 저개발국 교육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 · 기간: 2019.7-8월(2주내외) · 인원: 교사30명	교원	30,000 천원
글로벌리더십캠프 (중요)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19	미국	해외대학, 국제기구 등	·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육성 · 기간: 2019.1월(7박10일) · 인원: 학생30명, 인솔2명	학생	270,000 천원
베트남하노이시 교육청 학생교류 프로그램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20	베트남	하노이시교육청	· 학교 교육과정 체험, 홈스 테이, 문화체험 등 · 기간: 2020.1월(6박7일) · 인원: 학생24명, 교원 7명, 인솔2명	학생 및 교 직원	24,000 천원
러시아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초청(중요)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20	러시아	고려인 민족학교	· 해외학생들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충북 학교 및 문화체험 등) · 공공외교를 통한 충북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 기간: 2020.1월(5박6일) · 인원: 학생14명, 인솔3명	학생 및 교 직원	27,000 천원
글로벌리더십캠프 (중요)	학교자치과 (현. 국제교육원)	2020	미국	해외대학, 국제기구 등	·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육성 · 기간 :2020.1월(7박10일) · 인원: 학생30명, 인솔2명	학생	270,000 천원
이러닝 세계화 (ODA)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방문연수	미래인재과 (현 창의특수교육과)	2022	파라 과이	교육부, 주파라과이한 국교육원 현지학교, APEC국제교육협력원 등	·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온라인 연수) · 이러닝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기간: 2022.4-9월 · 인원: 교원120여명	교원	73,000 천원

○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전반에 걸친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더 긴밀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도 국제교류협력 대상국가와 교류사업들이 더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타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시도에서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타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 현황 '23. 7.〉

조례명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유사 조례	없음
교육청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충남, 대구, 인천	경남, 서울, 대전, 세종, 부산	광주, 제주: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충북: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협력에 관한 조례	울산, 경북

-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의 시대변화 추세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추진 사업에 걸맞게 조례명과 조문 내용을 변경하여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2008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 추진 근거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의 ‘국제교류협력’ 정의 규정에 변화된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 대상과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고, ‘학생’과 ‘교육지원’, ‘교육 관련 기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의 의미와 참여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 국제교류협력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운영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7조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sup>1)</sup>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 사업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교육지원 교류사업 외에도 국제포럼, 국제토론회 유치·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제교류협력 사항을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사료됨. 따라서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의회 의결 규정을 충청북도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활용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10(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8조의 사후관리 및 지원 규정과 안 제9조의 국제교류협력 취소에 관한 규정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 대상과 내용, 방법들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 같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보다 포괄적 의미를 담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정책과 사업들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개정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다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국제포럼 및 토론회의 실효성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예산 낭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집행청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들이 충북교육의 특성과 교육 현장의 적절성 및

효율성이 반영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취지·목적에 맞는 계획수립·시행을 위한 사업 선정 심사 및 관리체계 마련과 내실 있는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